

제재내용 공시

1. 조합명 : 부경신항수협

2. 제재조치(요구)일 : 2026. 09. 21.

3. 제재조치(요구)내용

제재대상	제재내용
직원	변상(5명), 경고(21명)

※ 향후 관련 내규 등에 따른 이의신청(재심) 처리결과에 따라 제재조치 내용이 변동될 수도 있음

4. 제재대상 사실

- ☐ 영업점장 특인대출 부실 발생
 - 가계일반자금 대출 연체되어 손실 발생함.
- ☐ 우량고객우대대출(신용) 취급 부적정 등
 - 기업운전일반자금을 부적정하게 취급 및 심사하였음.
- ☐ 외부감정평가 전산무작위 의뢰 부적정
 - 시스템에 부적정하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대출을 취급함.
- ☐ 기업운전자금 대출심사 소홀
 - 기업운전일반자금 취급 시 자금용도 등 심사를 소홀히 하였음.

< 관련법규 >

- 「상호금융 여신업무방법」 제2편 제4장 제20조(영업점장 특인대출)
- 「상호금융 여신업무방법」 제1편 제3조(여신운용의 원칙), 제45조(승인대출금 업무처리), 제48조의3(심사대상), 제48조의6(업무처리), 제54조(심사사항), 제87조(채무자 자격제한)
- 「상호금융 담보물 가격조사 업무방법」 제23조(외부감정평가 의뢰방법), <별표1-1>외부감정평가 의뢰 기준표
- 「상호금융 여신업무방법」 제1편 제15조(대출상당), 제19조(대출서류의 징구 및 확인), 제57조(담보·거래방식 용도 등에 따른 분류), 제3편 제2조(업무취급 원칙), 제3조(상당 및 서류 징구), 제34조(사업 계획), 제67조(자금용도외 유용의 정의)